



노스 캐롤라이나 상무부  
고용 안정 부문 실업 보험

[일자]

[회사]

[회사 주소]

[계정번호:]

고용 서비스과(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DES))는 귀하의 적정성 한계 결정에 대한 이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GS 96-11.4 하에 해당과가 다음 2 가지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고 결정하는 경우 회사의 계정은 비고용 보험 기금으로부터 잘못 지불된 혜택금과 관련하여 비용의 면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1. 회사나 회사의 대리인이 비고용 보상에 대한 청구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해당과의 서면상의 요청에 대한 적시의 혹은 적절한 응답을 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잘못된 지불이 이루어졌습니다. 잘못된 지불은 상기 청구에 관련한 정보의 해당과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회사나 회사의 대리인의 무응답이 행해지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2. 회사나 대리인은 비고용 보상에 대한 청구와 관련한 해당과로부터의 정보에 관한 요청서에 적시의 혹은 적절한 응답을 하지 않는 방식을 이루었습니다. 회사나 대리인이 적시의 혹은 적절한 응답을 하지 않는 방식을 갖추는지에 대한 결정에 있어 해당과는 상기 회사나 대리인의 이들에 이루어진 총 요청서와 관련한 무응답의 문서화된 예의 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요청 이전의 연도 중 응답하지 않은 수가 2 회 미만이거나 2 퍼센트 미만인 경우(둘 중 큰 수로서의 해당 회사나 대리인에 이루어진 총 요청서) 회사나 대리인은 적시의 혹은 적절한 응답을 하지 않는 방식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결정을 이루는데 있어 해당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귀하 혹은 귀하의 제 3 자가 제출한 서면상의 이의와 이에 대한 첨부서 (2) 각 회사로부터의 응답의 일정 혹은 적정성 (3) 비응답의 수 (4) 보고주기에 있어 귀하나 귀하의 제 3 자에 대하여 전달된 총 요청서와 관련해 귀하나 귀하의 제 3 자의 적시의 혹은 적절하게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서화된 예의 수

**[입증됨]**

이의사항의 검토 이후 귀하나 귀하의 제 3 자가 보고 주기동안 분리 정보에 대한 요청서에 대하여 적시의 혹은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서 비적절하거나 비적시적인 것으로서의 요청서의 초기 분류가 아래에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이의사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청구자	사회보장번호	수정된 응답
이름	xxx-xx-xxxx -	적정
이름	xxx-xx-xxxx	적정
이름	xxx-xx-xxxx	적시

**[거부]**

이의에 대한 검토 후 귀하나 귀하의 제 3 자는 여전히 보고주기의 분리정보에 대한 요청서에 적시의 혹은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는 방식을 이루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아래의 기재된 요청서의 기초 분류가 부적절하거나 적시의 형태가 아닌 것으로서 유지되었습니다. 결과로서 이의안은 거부되었습니다.

청구자

이름.

이름

이름

사회보장번호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

응답

비적절

비적절

비적시



**[비적시의 거부]**

이의의 검토후 이의 사항이 부적절하게 제출되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과로서 이의사항이 거부되었습니다.

각 비용주기의 결말에 적정 처벌 결정안이 추후에 발급되지 않는 경우 본 결정안은 항소의 추후의 권한이 없이 해당과의 최종의 결정을 이룹니다.

**비고용보험 사기를 방지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온라인으로 의심되는 비고용보험 사기를 보고하십시오([des.nc.gov](http://des.nc.gov))

우체국 상자

노스 캐롤라이나

NC CLM 627 TD

**비고용보험 사기를 방지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온라인으로 의심되는 비고용보험 사기를

보고하십시오([www.des.nc.gov](http://www.des.nc.gov))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orth Carolina 27611-5903